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2. 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수정이유

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, 금고의 약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(안 제4조제2항 제3호)
 - 안 제4조제2항제3호 “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 삭제
- 나. 금고의 약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5조)
 - 금고약정기간 : 4년 → 2년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중 “4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 4조(금고지정) ①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</p> <p>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3. <u>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</u>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(생략)</p> <p>5조(약정기간)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은 <u>4년</u>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.</p>	<p>제 4조(금고지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(삭제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5조(약정기간) ----- -- <u>2년</u>----- -----</p>